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용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1
----------	------

발의연월일 : 2015. 11. 10.

발의의원 : 하용하 의원, 하중환 의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달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2016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2016년도에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월 1,747,600원 → 1,782,550원)(안 제3조제2항)
-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공문(사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 소속 공  
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  
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 소속 공무  
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  
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공무여행

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 ④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의 정 활 동 비
월 1,1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별표 2】 (개정 2005. 9. 30, 2006. 5. 15, 2007. 12. 3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2016년 월정수당	월 1,782,550원
2017~2018년 월정수당	매년 전년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되 2%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개정 2006. 5. 15, 2006. 10. 4)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 ※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개정 2006. 10. 4)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4조 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이상의 등 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 급의 철도임	·2 등 급 이 상 의 등급구별이 있 는 경우에는 최 상등급의 선임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가등급 166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35	나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35	다등급 92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79	라등급 49					
의 원	·공무상의 사유 로 인하여 급행 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 로 인하여 급행 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가등급 145	가등급 81	130	155	180
					나등급 30	나등급 95	나등급 59			
					다등급 30	다등급 70	다등급 44			
					라등급 30	라등급 62	라등급 37			

※ 비교: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text{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연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 제목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기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1. 개최일자 : 2014. 10. 28(화) 15:00~
2. 심의장소 : 달성군청 8층 상황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결과

가. 2015년 의정비 지급기준 : 동결

- 합 계 액 : 34,171,200원(월 2,847,600원, 현행과 같음)
- 월 정 수 당 : 20,971,200원(월 1,747,600원, 현행과 같음)
- 의정활동비 : 13,200,000원(월 1,100,000원, 현행과 같음)

나. 2016년 ~ 2018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여부

- 매년반영. 단, 매년 2% 범위내 적용

다. 여비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 범위내. 끝.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달성군수, 달성군의회회장

위원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Chairman.

시행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 (2014. 10. 28)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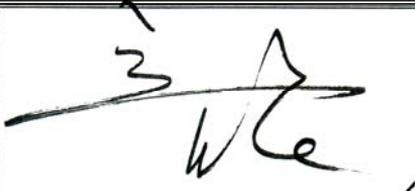
우 711-79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전화 053-668-2112

전송 053-282-7102

/ 대국민 공개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하 용 하	하 용 하	
하 정 환	하 정 환	

